

현안리포트 05-049

WTO 제 6차 홍콩각료회의의 결과 및 향후 전망

2005.12

KOTRA 통상전략팀

< 목 차 >

[요 약]

I. WTO 제 6차 홍콩각료회의

- 1. 홍콩 각료회의 개요 1
- 2. 홍콩각료회의 과정 2

II. 홍콩각료회의의 주요결과 및 향후전망

- 1. 칸쿤과 홍콩각료회의의 결과 비교 4
- 2. 분야별 협상결과 5
- 3. 향후전망 6

III. DDA 협상의 주요 세부 내용

- 1. DDA 협상의 주요 과정 9
- 2. 주요 분야별 협상 내용 11
 - 1) 농산물분야 11
 - 가. 협상동향 11
 - 나. 주요내용 11
 - 2) 비농산물분야 18
 - 가. 협상동향 18
 - 나. 주요내용 19
 - 3) 서비스분야 21
 - 가. 협상동향 21
 - 나. 주요내용 22
 - 4) 개발분야 24
 - 가. 협상동향 24
 - 나. 주요내용 24

【 요 약 】

□ 홍콩각료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

- 농산물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폐지하고 면화 부분의 수출보조금도 2006년까지 폐지키로 하였으며, 비농산물의 관세 감축방식은 스위스 방식을 채택키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수선택방법은 차후 협의키로 함
- 농산물·비농산물의 구체적 개방이행의무에 대한 논의는 2006년 4월 30일까지 협상세부원칙(Modality)을 도출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포괄적 이행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기로 함
-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2008년부터 적용키로 하였으나, 전면수용이 어려운 선진국은 97%만 적용키로 함

□ 향후 전망

- 홍콩각료회의는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향후 협상의 모멘텀 유지 차원의 선언문만 채택, 향후 DDA 협상 진행의 어려움 예상
- 비농산물분야의 관세율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FTA체결에 늦게 나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여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경우 WTO DDA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향하는 것이 유리하나 DDA협상전망이 불투명하여 FTA 중요성이 강화됨

I. WTO 제 6차 홍콩각료회의

1. 홍콩 각료회의 개요

가. 개요

- 회의명 : WTO 제 6차 홍콩각료회의
(The Sixth session of Ministerial Conference, WTO)
- 기 간 : 2005.12.13(화)~18(일)
- 장 소 : 중국 홍콩 (홍콩컨벤션센터)
 - ※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최소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의결기구
- 참가국 및 국제기구
 - WTO 회원국 : 149개국
 - 옵저버국가 : 40개국
 - 옵저버기구 : 76개 국제기구

나. 주요의제

-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전반적 점검
- 주요 의제 논의의 세부협상방안 도출
 - 농산물, 비농산물 등의 관세감축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조항
- 향후 DDA 협상 방향 논의

다. 홍콩각료회의의 성격

□ DDA 협상의 모멘텀(momentum) 확보

- 국가별 FTA(Free Trade Agreement) 추진, EU 확대 등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WTO DDA 같은 다자주의 체제 구축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홍콩각료회의의 결렬은 향후 DDA 협상자체의 결렬까지 이어진다는 불안감을 회원국들이 공유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협상 진행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

□ 협상국간 합의 도모

- DDA 출범당시 2005년 12월을 타결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04년 7월 July Package를 통해 제 6차 홍콩각료회의를 DDA 협상의 세부시행방안 확정 시점으로 정정
- 시애틀, 칸쿤 등 이전 각료회의의 결렬 등 전반적인 DDA 협상의 난항으로 인해 홍콩에서 세부이행사항의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사전에 전망되어 협상목표를 하향 수정하였음
- 따라서 이번 홍콩각료회의담은 회원국의 새로운 협상 제안보다는 기존의 국가별 입장에 대한 합의와 향후 협상일정 및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성격으로 분석 가능

2. 홍콩각료회의의 주요 과정

- 12월 13일(화) < 개회식 >
 - 중국 홍콩 행정부 수반인 Donald Tsang이 제 6차 각료회의담의 개회선언
 - Donald Tsang은 6명의 각료를 농업, 비농산물, 개발분야 등의 facilitator로 임명

○ 12월 14일(수) <각료회의 본격시작>

- 농산물, 비농산물, 개발 등의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인 각료회의시작
- 개발도상국의 최대 이슈인 면화문제에 대해서 논의

○ 12월 15일(목) <통가의 WTO 가입>

- 149개 회원국들은 통가의 WTO 가입(150번째 회원국)을 정식 승인
- 최빈개도국(LDCs) 문제에 대해서 본격 논의 시작

○ 12월 16일(금) <Lamy 의장 주최 회의개최>

- 각료선언문 마감시한 공지
- 약 40개국이 참가하여 농산물, 비농산물, 개발 등에 대해서 논의

○ 12월 17일(토)

- 각료선언문 4차 초안 발표

○ 12월 18일(일)

- 최종 각료선언문 발표 및 채택
- 제 6차 각료회담 폐회

II. 홍콩각료회의의 주요결과 및 향후전망

1. 칸쿤과 홍콩각료회의의 결과비교

구분	칸쿤각료회의의 (2003.9)	홍콩각료회의의 (2005.12)
전반적 진행	○ 협상기본골격에 대한 합의 목표 ○ 농산물개방과 싱가포르이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게 대립 ○ 구체적인 합의 없이 DDA 논의진행을 지속한다는 간단한 선언만 채택	○ 협상기본골격과 구체적 논의시한합의 목표 ○ 농산물개방속도에서 EU와 기타 회원국들이 (미국, 브라질, 인도) 참여하게 대립하고 서비스분야, 비농산물개방협상에서는 개도국이 농산물개방진전을 조건으로 협상 ○ 농업분야에서 수출보조금, 면화수출 보조금의 폐지이행의 구체적 시기를 합의한 선언문 채택
주요 결과	○ 농산물 : 구체적합의 없었지만 상당한 논의 진행 ○ 비농산물 : 관세인하방식 합의 실패 ○ 서비스 : 핵심논쟁 이슈가 아니었음 ○ 싱가포르 이슈 : 각료회의 말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로 논의가 좁혀짐	○ 농산물 : 수출보조금 종료시한 합의 (2013년) ○ 비농산물 : 관세인하방식으로, 고관세일수록 관세 인하폭이 높아지는 스위스 공식 채택 (개도국 신축성 계수의 설정방법 등은 미합의) ○ 서비스 : mode(서비스유형)별 협상목표 및 양자적 Request and Offer(R/O)방식을 보완 하는 복수국가간 R/O 방식 채택 ○ 싱가포르 이슈 : 주요 안건의 논의에서 제외 ○ 개발이슈 : 2008년까지 모든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합의
결론	○ 소득 없는 선언문채택	○ 모멘텀 유지 차원의 선언문 도출

2. 분야별 협상결과

가. 농산물

-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한 대립 속에서 미국과 EU는 자국이 DDA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수출보조금 및 면화 관련논의에서 구체적인 양보안을 내며 전체 DDA 파국은 단기적으로는 피하게 되었음
- 수출보조금은 2013년, 선진국의 면화수출보조금 2006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기타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2006년 4월 30일까지 협상세부원칙(Modality)에 합의하기로 함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과 개도국이 시장접근의무 예외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의 설정 합의

나.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임산물 등)

- 비농산물 협상은 농산물협상의 개방수준과 개도국우대 합의수준에 준하는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음
- 차후 협상일정은 2006년 4월 30일까지 협상세부원칙(Modality)를 도출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포괄적 이행계획서 초안 제출하기로 합의
- 전체적으로 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와 개도국에게 같은 수준의 개방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적용의 중요성을 강조
- 관세인하방식으로, 고관세일수록 관세 인하폭이 높아지는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였으나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 계수설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다. 서비스 및 개발

- 서비스협정은 회원국들의 서비스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협상내용을 진행 할 것을 합의
- 개도국에게는 서비스협정 의무이행시 유연한 의무이행을 인정하고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새로운 개방의무를 요구하지 않음을 합의
- 합의문에 첨부된 서비스협정첨부물에 기록된 분야별 모드별 개방의무를 확대하고 개방의 질을 높일 것을 합의
- 서비스유형(Mode)별 협상목표 및 양자적 Request and Offer (R/O) 방식을 보완 하는 복수국가간 R/O 방식 채택
- 개발 분야에서는 2008년까지 모든 최빈개도국의 모든상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적용을 합의하였으나 전품목에 적용이 힘든 회원국들은 관세품목의 3%이내에서 관세 이행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

3. 향후 전망

가. 향후 DDA 협상에 미칠 영향

-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은 WTO총장인 파스칼 라미의 “가치있는 결과”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향후 협상의 모멘텀 유지 차원의 선언문만 채택됨
- 홍콩각료회의 이후 미국과 EU내부에서 서비스, 비농산물 협상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특히 EU의 협상대표 피터 멘텔슨은 농산물분야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밝히고 타 회원국에 대해 서비스·비농산물의 개방폭을 넓힐 것을 요구

- 개도국들은 2006년 면화수출보조금폐지와 수출보조금의 2013년 완전폐지라는 합의는 이미 미국과 EU가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농업개혁의 속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개도국에 실제적인 도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
- 홍콩각료회의이후 논의는 농업의 경우 관세감축에 대한 세부사항과, 국내보조 세부사항 및 간접수출보조조치(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농산물의 경우 스위스공식의 구체적 계수조정방법과 개도국우대조치를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임
- 협상내용과 시한을 고려했을 때 협상타결이 2006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으나 미국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¹⁾이 2007년 6월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협상이 극적으로 막판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²⁾

나.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수출보조금 2013년 폐지 및 면화수출보조금 2006년 폐지결정은 한국농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시장접근관련 추후논의 결과에 따라 농산물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농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됨
- 한국으로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을시 개도국에게 부여되는 특별품목지정 권리를 통해 농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개도국지위부여는 불투명한 상태
- 개도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할 시에는 모든 회원국에게 주어지는 농산물 민감품목 지정조항을 통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 연구가 필요
- 비농산물분야에서 개도국의 관세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FTA체결이 부진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여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1)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이 합의한 WTO 등의 무역협상 결과를 미국의회가 수정 없이 가·부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의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2) 신속처리권한의 연장을 미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타결이 2006년 말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서비스개방은 서비스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했을 때 섹터별로 긍정적인 영향(통신·건설)과 부정적인 영향(교육·병원)이 예상되므로 섹터별로 구분된 협상 전략이 필요
- 한국의 무역규모(세계 12위)와 국제통상회의에서 한국의 지도적 위치추구를 감안할 때 최빈개도국의 품목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적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섬유·의류³⁾ 등의 산업은 가격경쟁력의 열위로 어려움이 예상됨
- 한편 DDA 협상의 부진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 (FT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년도	1950~'59	1960~'69	1970~'79	1980~'89	1990~'99	2000~'05
신규	2	2	13	7	48	114
누계	2	4	17	24	72	186

- 자료 : SERI 경제포커스 제 70호 (2005.12.12)

- FTA의 중요성이 더 부각 될 경우 중국, 미국 등의 경제규모가 큰 나라의 경우 양자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많음
-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국제적 협상력이 약한 국가의 경우 다수의 FTA를 체결할 경우 각 국가와의 협상내용이 복잡해져 동일하지 않은 수출환경에 노출 위험이 존재
- 우리나라는 DDA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향하는 것이 유리하나 DDA협상전망이 불투명함을 감안하여, FTA 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⁴⁾

3) 한국은 섬유·의류 관세율이 8-13% (2002년기준)에 이르러 전체 비농산물평균관세율인 6.7% (2004년도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4) FTA 미참여로 인한 한국수출상품의 구체적 피해사례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 : KOTRA 2004 세계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차별사례 (기획조사 04-56)

III. DDA 협상의 주요 세부 내용

1. DDA 협상의 주요 과정

가. 1995년 : UR(Uruguay Round)협상 타결 및 WTO 출범

-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법적'으로는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기존의 GATT와는 달리 UR 협상의 결과물인 WTO는 세계무역관계 전반을 관할하는 법인격을 보유한 국제기구로 출범
- WTO체제는 공산품 분야 이외에도 기존 GATT 체제의 규율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던 농산물, 섬유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에 관한 국제무역규범 정립

나. 2001년 : DDA 출범

- 우루과이협상 결과의 미흡한 이행과 새로운 통상이슈의 부각에 따라 협상 분야에 대해서 각국이 입장을 표명
 -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뉴라운드”라는 용어 대신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뜻의 “도하개발아젠다(DDA)”로 통칭
 - 우루과이협상 결과 선진국의 공산품 수입관세가 1995년 평균 6.3%에서 2000년엔 3.8%로 40%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농산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이 미흡
-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3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채택된 통상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반덤핑, 보조금),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협상 시한 : 2005.1.1)

- 우리나라로서는 농업과 서비스(법률, 회계, 교육, 의료, 금융, 방송, 운송, 관광 등) 시장 개방이 가장 큰 이슈

다. 2003년 :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 DDA 협상의 중간 점검차원의 성격이 강했던 제 5차 칸쿤각료회의에서 주요 분야에서 합의 실패
- 당초 농업부문의 협상이 실패 요인으로 전망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ACP⁵⁾ 국가를 포함한 최빈국그룹의 싱가포르⁶⁾ 이슈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
- 이전까지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이 다자간무역협상을 주도했던 반면에 칸쿤회의를 통해서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을 필두로 개도국들이 세력을 규합해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함

라. 2004년 : July Package⁷⁾

- July Package를 통해 제 5차 칸쿤각료회의(2003년 9월)에서의 중간합의 도출 실패로 교착되던 DDA 협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음
- 당초 예정했던 협상시한을 넘겨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

5) 아프리카(African), 카리브(Caribbean), 태평양(Pacific) 연안 국가

6) 싱가포르 이슈 :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7) 2004.7.27~29일간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Framework 확정에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제안

2. 분야별 주요 협상 내용

1) 농산물분야

가. 협상 동향

- DDA 농산물 협상은 크게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분야, 수출경쟁분야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그 중 각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시장접근 분야임
- DDA 농산물 협상은 DDA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개도국의 특별대우 이슈 논의의 중요한 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특별품목, 특별세이프가드, 기타 개도국 우대방안이 대해 논의되고 있음
- 농산물협상은 개발이슈에 관련된 시장접근분야와 국내보조분야에서 농산물 수출국, 수입국, G10⁸⁾, G33⁹⁾ 등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

나. 주요 내용

☐ 시장접근분야 (Market Access)

- 주요협상이슈
 - 관세감축공식 및 계수설정문제와 관세감축보조규칙 그리고 관세감축의무에 적용될 개도국 특별대우

8) 우리나라, 일본 등 농산물 주요 수입국 그룹

9) 개발도상국 국가 모임

○ 관세감축공식

- 관세감축의 틀은 4개의 감축구간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됨
- 구간 내 감축방식에 대해서는 일정관세율을 각 관세구간의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선형접근방식으로 의견 수렴중이나 합의되지는 않음

<제안된 구간경계 및 감축율 폭 (일반품목)>

구간	선진국		개도국	
	관세구간 경계 및 범위	관세구간별 감축율	관세구간 경계 및 범위	관세구간별 감축율
1	0 ~ 20/30%	20% ~ 65%	0% ~ 20/50%	15% ~ 25%
2	20/30% ~ 40/60%	30% ~ 75%	20/50% ~ 40/100%	20% ~ 30%
3	40/60% ~ 60/90%	35% ~ 85%	40/100% ~ 60/150%	25% ~ 35%
4	60/90% 초과	42% ~ 90%	60/150% 초과	30% ~ 40%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¹⁰⁾

- 민감품목에 지정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논의필요성을 인지하는 선에서 홍콩각료회의 선언문 합의
- 민감품목수의 결정에 관해선 각국의 의견이 대립 중으로, 각국 전체 농산물 품목 중 민감품목수를 최소 1%(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에서 최대 15%(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까지 지정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특별세이프가드 (Special Safeguard Mechanism)¹¹⁾

- 수입량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발동할 수 있음을 합의하였으나,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기준의 구체적 수치에 대한 합의는 차후로 미루어짐

10) 국내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감축율을 정할 때 일반품목에 비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됨.

11) 개도국에게만 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줌

○ 특별품목(Special Products)¹²⁾

- 특별품목 설정문제에 있어서 개도국은 특별품목을 지정할 때 각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합의
- 전체농산물 중 몇 퍼센트까지를 특별품목으로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합의 없음
- 특별품목에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에 관해서 개도국은 동 품목을 시장접근의무(관세인하 등)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나, 선진국 및 농산물 수출국들은 동 품목의 시장접근 개방 정도를 고려하면서 신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 개도국 우대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개도국의 관세감축 폭을 축소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구체적인 관세감축 폭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여 합의 없음
- 민감품목 관련 문제에 있어서 개도국의 감축폭은 더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신축성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 없음

○ 저율 관세할당물량¹³⁾(TRQ)내의 관세철폐, 관세구조의 단순화, 경사관세¹⁴⁾ 등의 기타문제는 합의 없이 추후논의로 넘어감

12) 특별품목은 개도국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식량안보, 특별그룹의 보호 (livelihood security), 농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특정품목을 지정 시장접근의무예외규정을 둘 수 있음

13) Tariff Rate Quota (TRQ)란 WTO 농산물협정에서 수량제한을 철폐하면서 도입된 농산물에만 해당하는 관세제도로 각국은 일정수준의 TRQ(관세할당물량)를 지정해야 함. 지정된 TRQ 내의 수입농산물에는 저세율을 TRQ를 초과하는 농산물은 고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14)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란 1차 생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가 가공 생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함. 국내산업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국들이 사용하는 방법임

□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 주요 협상이슈

- 무역왜곡¹⁵⁾을 일으키는 국내보조금 감축방식과 감축의무를 보조하는 규칙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음

○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 및 보조총액측정치 (AMS)¹⁶⁾ 감축

<총 보조 삭감 제안 폭>

구간	농산물 생산량 구간범위	해당국가	감축률
1	0 ~ 100억불	기타 선진국·개도국	31 ~ 70%
2	100 ~ 600억불	미국·일본	53 ~ 75%
3	600억불 이상	EU	70 ~ 80%

< 보조총액측정치 (AMS) 감축 제안 폭>

구간	농산물 생산량 구간범위	해당국가	감축률
1	0~120/150억불	기타 선진국·개도국	37 ~ 60%
2	120/150억불~250억불	미국·일본	60 ~ 70%
3	250억불 이상	EU	70 ~ 83%

- 개도국을 최하위구간(구간1)에 배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
- 최하위구간(구간1)에 배정된 선진국은 보다 많은 보조금총액감축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수치 결정 없음

15) 무역왜곡 (Trade Distortion)이란 수입국의 여러 가지 인위적인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정해지는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귀결되는 경우를 의미

16) 보조총액측정치 (Aggregated Measurement of Support) - 1986-88년을 기준 일년간 국내보조에 투입된 총 보조금액. GATT 1994에 의해서 선진국은 1996년을 시작으로 5년간 농업총생산액의 20% 감축, 개도국은 10년간 13%감축 의무가 있음

- 총 보조액 감축량이 보조총액측정치·블루박스·최소허용보조 세가지 분야 감축분의 합보다 커야하는데 이는 회원국이 한 분야에서 감축한 국내보조를 다른 분야에서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최소허용보조¹⁷⁾(de minimis)

- 개도국의 감축분을 선진국의 50~80% 수준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가 없음
- 개도국들은 AMS가 없는 개도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하자는 입장

○ 블루박스 (Blue Box)

- 블루박스 논의는 회원국간의 이견이 크지 않아 홍콩각료회의동안 중요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4년 July Package에서 제안된 기본골격보다 더 강화된 제한필요에 상호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내보조 상한이 없던 블루박스 상한을 농업총생산액의 5%로 정하자는 제안과 2.5%로 축소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상한제한 반대의견도 존재

○ 그린박스 (Green Box)

- 그린박스에 대한 논의사항 역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후 논의 대상으로 미루어짐
- 기존 그린박스 기준의 수정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과 기준 수정이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국내농업개혁프로그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 중

17)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는 보조총액측정치의 총 보조금액에 속하지 않는 국내보조로 구체적인 품목 최소허용보조와 구체적인 품목과 관련이 없는 전체 최소허용보조로 나뉜다. 선진국은 5% 최소보조가 허용되고 개도국은 10% 최소보조가 허용됨

- 개도국우대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무역왜곡적이지 않으면서 개도국의 농업현실에 맞게 그린박스를 조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

<국내보조관련 용어 정리>

□ 정의

- 신호등 시스템을 차용 앰버박스 (Amber Box), 그린박스 (Green Box), 블루박스 (Blue Box)로 구분하며, 박스색은 국제무역왜곡을 일으키는 국내보조에 따라 구분

□ 종류

○ 앰버박스

- 무역량과 생산량 왜곡을 일으키는 국내보조로 궁극적 철폐를 목적으로 보조총액측정치 (AMS) 방법을 통해 국내보조 삭감의무가 정해짐
-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총 농산물국내생산량의 5%(개도국 1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보조를 보조총액측정치 총량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보조총액측정치방법에 따른 감축을 제안하지 않은 회원국은 최소허용보조 내에서 국내보조가 허용됨
- 우리나라의 추곡수매를 위한 보조금이 이에 해당

○ 블루박스

- 기본적으로 앰버박스에 해당할 수 있는 품목이나 보조금 지급 시 농산물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 품목이 이에 해당되며, 보조금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음

○ 그린박스

- 무역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또는 미미한) 국내보조가 이에 해당(정부보조만 포함)
- 가격보조는 그린박스에 포함되지 않고, 구체적 품목에 대한 보조금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에 관련이 없는 (decoupled) 직접적인 수입보조를 통해 이루어짐
- 보조금상한선은 없으며, 병충해방지와 식품안전등을 위한 보조 또는 생산과 관련이 없는 농가수입보조 등이 이에 해당됨

□ 수출경쟁분야 (Export Competition)

○ 수출보조 철폐 시한

- 2010년까지 철폐안과 2013년까지 철폐안 중 EU의 주장을 수용, 2013년까지 수출보조금 전면철폐에 합의하였으나 EU는 타회원국 특히 미국의 무역왜곡적인 수출관련조치들에 대한 세부원칙의 추후합의를 조건으로 함
- 개도국은 수출보조철폐의무를 2013년부터 5년간 유예를 받음

○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금 철폐의무를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과 최빈개도국과 식량수입국들을 위한 규칙들을 2006년 4월 30일까지 도출하도록 합의
- 신용보증(180일 이내 상환조건), 보험프로그램, 수출신용 등 수출관련 시스템을 가능한 짧은 기간동안만 유지하고, 시장원리 및 상업적 원칙대로 운용되도록 조정 하는 것에 합의

-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인 업무를 철폐하는 규정을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독점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합의
- 식량원조 수혜국의 이해관계(긴급상황)를 고려 수혜국의 혜택을 보장하는 실질적 장치 마련과 함께 상업적 활동을 저해하는 식량원조에 관련된 관행 (현물지급식량원조, 현금화, 재수출)에 대한 원칙설정을 하도록 합의

□ 면화 (Cotton)

- 베닝, 부르키나 파소, 차드, 말리 등의 면화생산국인 아프리카 최빈개도국들의 주도로 시작된 면화수출보조금폐지논의는 최대면화수출보조국인 미국과의 감축논의 끝에 선진국의 모든 면화수출보조금을 2006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
-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DDA타결 후부터 무관세 무쿼터 적용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면화관련 국내보조에 관한 구체적 협의는 추후논의로 남겨짐

2) 비농산물 분야

가. 협상 동향

-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에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모든 비농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추가 감축 또는 철폐하되 개도국 수출품목은 우대하기로 합의
- 2004년 7월 전체적인 골격 협정을 마련하였고 (July Package), 모든 회원국들이 시장접근분야에서 자유화를 위한 세부원칙 (Modalities) 채택하여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2005년 9월 이후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합의 도출 노력 중
-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i) 관세감축공식, ii) 개도국에 적용되는 신축성논의, iii) 비양허관세의 Mark-Up¹⁸⁾ 시스템도입여부의 세가지 안전에 대해서 중점 논의

18) Mark-Up 시스템은 미양허관세를 양허관세로 전할 할 때 미양허관된 품목의 관세율에 일정퍼센트를 더해서 관세감축 시 기준관세로 사용하도록 양허관세율을 정하는 방법

나. 주요 내용

□ 관세인하 공식(Formula)

- 스위스공식 채택 및 스위스공식의 구체적 계수를 합의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
- 스위스공식의 구체적 계수 도출은 첨두관세(Tariff Peak)¹⁹⁾, 고관세(High Tariff)²⁰⁾,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등 특별히 개도국의 수출품에 영향이 큰 관세를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
- 스위스공식의 구체적 계수도출을 위해서 불완전 상호주의 감축 원칙을 포함,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하기로 합의

□ 미양허품목

- 미양허품목 양허시 관세감축을 위한 기준세율 설정문제에 있어 비선형 부가방식(mark up)을 선택
- 개도국은 양허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장려됨
- 최빈개도국의 경우 양허대상 확장의무 이행여부를 자국 스스로 판단하기로 합의

□ 분야별 무세화

- 분야별 무세화 논의 (sectoral initiative)를 위해 충분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19) 첨두관세(Tariff Peak)이란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말함.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으로는 15% 이상, 국내 기준으로는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임

20) 고관세(High Tariff)란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높은 관세를 지칭하며 고관세 여부 판단을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는 15% 이상을 의미함

- 자발적 참여에 의한 Critical mass 방식²¹⁾으로 자전거, 화학, 전기·전자, 보석,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발적 참여’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몇몇 개도국은 관세감축 공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야별 무세화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분야별 무세화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생각

□ 개도국 우대

-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관세감축공식에서 더 작은 계수를 선택할 경우, 개도국우대문제에 있어 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 개도국들은 관세감축공식의 계수와 개도국우대문제는 연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 NTB)문제

- 현재 각 회원국들에 의해 통지된 비관세무역장벽을 확인, 분류, 조사 중
- 다양한 무역장벽들을 양자간·수직적·수평적 방법²²⁾을 사용하여 접근
- 수출세 문제 등과 관련해 이러한 분야는 비농산물 협상의 위임사항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견 존재
-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존의 합의내용 확인

21)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교역량(또는 생산량)이 “세계교역량 (또는 생산량)의 X%”을 넘게 되면 Critical mass를 형성하였다고 말함

22) 수직적 방식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각각의 개별 품목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접근 하는 방식 이고, 수평적 방법은 수출세, 수출제한 등 개별 수단 별로 부과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접근 하는 방식

□ 기타

- 비종가세²³⁾(non ad valorem duties)를 종가세(ad valorem duties)로 전환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확인
- 관세감축에 포함되는 품목 수 조정에 노력.
- 관세감축에 민감한 소규모 국가에 대한 고려

□ 차후 협상일정

- 차후 협상일정은 2006년 4월 30일까지 협상세부원칙(Modality)을 도출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포괄적 이행계획서 초안 제출하기로 합의

3) 서비스 분야

가. 협상 동향

- 서비스협상은 UR협상시 지적재산권협정과 함께 새로 포함된 분야로 1995년 이전의 GATT체제의 상품무역협정과 함께 WTO 체제내의 3대 기둥으로 자리 잡음
- 2000년부터 농산물과 함께 UR협상 기설정의제²⁴⁾의 하나로 새서비스협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DDA발족으로 협상이 본격 개시되어, 농산물 비농산물과 함께 DDA 3대 의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3) 비종가세(non ad valorem duties)종가세가 아닌 모든 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이 이에 해당됨. 종량세는 단위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24) 기설정의제는 UR협상시 시간상 합의에 이루기 어려웠던 논의들을 따로 모아 사안별로 시한을 정해 논의하게 했던 것을 지칭

나. 주요 내용

- 서비스협정에 정의된 4가지 서비스무역방법별 협상목표를 중심으로
 팔목할만한(Progressively higher level)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함
- Mode 1 - 현재수준의 시장개방유지, 서비스제공 기업의 주재(requirement of commercial presence) 전제요건 삭제 목표
- Mode 2 - 현재 개방수준유지, Mode 1 양허분야에 대해 Mode 2 양허
- Mode 3 - 외국 지분 참여수준 향상하고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s or ENT) 제거 또는 실질적 감축. 법인설립이 허용되는 법인종류에 대해 신축성 부여
- Mode 4 - 계약직 서비스 공급자, 독립전문가, 기업내전근자, 사업상 방문자등의 취업이 보다 용이(ENT 제거 또는 축소)하고 투명 (주재기간/연장가능성표시)하도록 신규양허 또는 기존양허의 개선을 위해 노력

< 서비스 용어 정리 >

- Mode 1 (국경간 공급) : 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으로 A국의 거주자가 B국의 은행에 우편/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 그 한 예임
- Mode 2 (해외소비) : 해외관광 등 자국민이 해외로 나가 서비스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이에 해당
- Mode 3 (상업적 주재) : 기업이 외국에 회사설립(FDI)을 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이 국내에 (또는 그 반대) 호텔, 식당 등의 체인을 설치하는 것이 그 한 예임
- Mode 4 (노동인구의 이동) : 개인 노동자가 국가간 이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

○ 기타 협상 목표

- 최혜국대우(MFN) 면제²⁵⁾ : 최혜국대우 면제의 혜택을 입는 분야의 실질적 감축 또는 삭제, 잔여 최혜국대우면제의 적용 및 기간의 투명화
- 최혜국대우 및 시장접근 양허안 실행 스케줄 : 양허안 실행 스케줄의 기재 및 양허안 분류의 명료화, 명확화, 동등성, 통일성보장. 잔여 ENT 항목이 양허안 실행 스케줄가이드라인에 준수하도록 보장
- 2003년 9월에 채택된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결정이 전반적이고도 효과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노력 촉구
- 긴급수입제한조치 (GATS 10조), 정부조달에 예외조항 적용(GATS 13조), 서비스협정에서 보조금정의(GATS 15조)에 대한 규범논의를 촉구
- 무역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라이선스 취득조건과 기술표준 등의 국내규제원칙(GATS 6조 4항) 개발노력 촉구
- 협상방법 : 쌍방간 R/O 방법에 복수간 또는 다자간 협상방법 추가 논의. 소규모국가의 현실고려, 최빈개도국 특별대우고려, 기술원조 고려
- 협상시한 : 2006년 2월 28일 - 첫 번째 복수국가간 요청서 제출
2006년 7월 31일 - 두 번째 복수국가간 요청서 제출
2006년 10월 21일 - 세 번째 복수국가간 요청서 제출

25) 서비스협정에서는 상품협정과 같이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차별을 금지(National Treatment) 그리고 수출국간 상품 차별금지(Most Favored Nations)를 통한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이 적용되나 예외조항으로 회원국들이 지정하는 산업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원칙을 면제받을 수 있음(예: 영화, 금융업, 항공산업 등)

4) 개발분야

가. 논의 동향

- 기존의 다자무역협상이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반해 DDA에서는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개도국 우대문제가 협상 타결의 주요 문제로 등장
- WTO협정의 개도국 우대규정 강화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확대·기술협력 이행방안 등을 논의

나. 주요 내용

○ 일반품목

- 2008년까지 선진국들은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허용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전 품목에 무관세·무쿼터 적용이 힘든 회원국들은 관세품목 중 3%를 이행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면화

- 면화의 경우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을 2006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DDA 타결시 최빈개도국이 수출하는 면화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허용하기로 합의

작성자

◆ 통상전략팀 김성재 과장
 문진욱
 김찬열
 안혜미

WTO 제 6차 홍콩각료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